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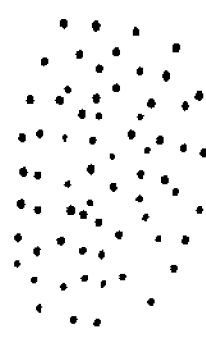
○ 파업파괴에 동원된 용역강패와 노숙자들



(효성사측이 동원한 용역강패1 - 5월 25일 새벽)



(효성사측이 동원한 용역강패2 - 5월 25일 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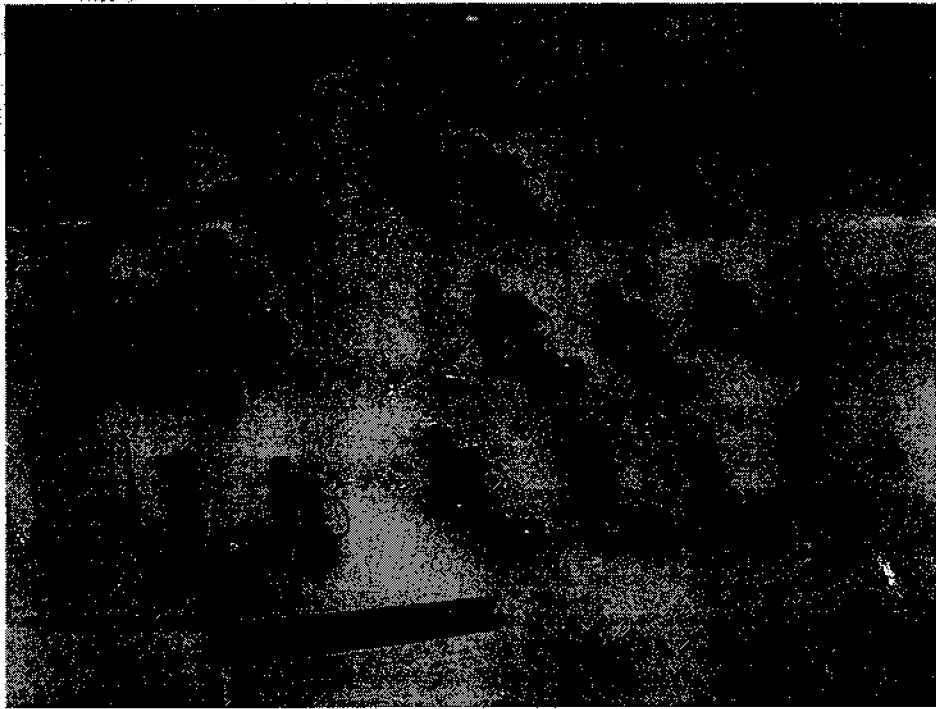




(소화기를 던지는 용역광패3 - 5월 25일 새벽)



(방패와 헬멧으로 무장한 용역장패 - 5/25일 새벽)



(용역강패들이 소지했던 무기들)



(용역강패들이 소지했던 무기들2)



(과업을 막기 위해 회사측이 동원한 노숙자들)



(과업을 막기 위해 회사측이 동원한 노숙자들2)

... 서울 ... 수 ...
 ...
 ...
 ...
 ...
 ...
 ...
 ...
 ...
 ...

...
 ...
 ...

...

(노숙자들의 진술서1)

...
 ...
 ...
 ...
 ...
 ...
 ...
 ...
 ...
 ...
 ...
 ...
 ...
 ...
 ...
 ...
 ...
 ...
 ...
 ...
 ...
 ...
 ...

(구사대로 등원한 관리자들과 노숙자들의 진술서2)

100922-1578916 김길호

저는 영등역에서 노숙을 하다가 친구랑 함께 할거
한다는 노래를 듣고서 친구하고 함께 서울역광장에서
관광버스를 타고서 울산이라는 회사 공장에 5월 25일
금요일날 아무일도 모르 도착하였습니다
막상 이러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보니 취의래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11-15호

(노숙자들의 진술서3)

김길호 100922-1578916 서울역

저는 의식을 그만두고 서울역 근처 PC방에서
생활하던 중 PC방에서 개인을 차는 마
어떤 사람이 와서 생활습관이 어떻냐고 해서
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할 수 없는 것만
됩니다. 들었으며 보통 4단원 생활을 합니다
하듯 합니다. 무슨 요일 에 10시간을 다들 하기
모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이 아닌 꿈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착후 생활기를 살리고 자고
하듯이 돈은 없고 차를 빌려서 시간을
돌아가 하루 반 세리하고하 보며 계속 살면
취의래도 으나 사운이 없고 차가 없었으면
저는 이제 모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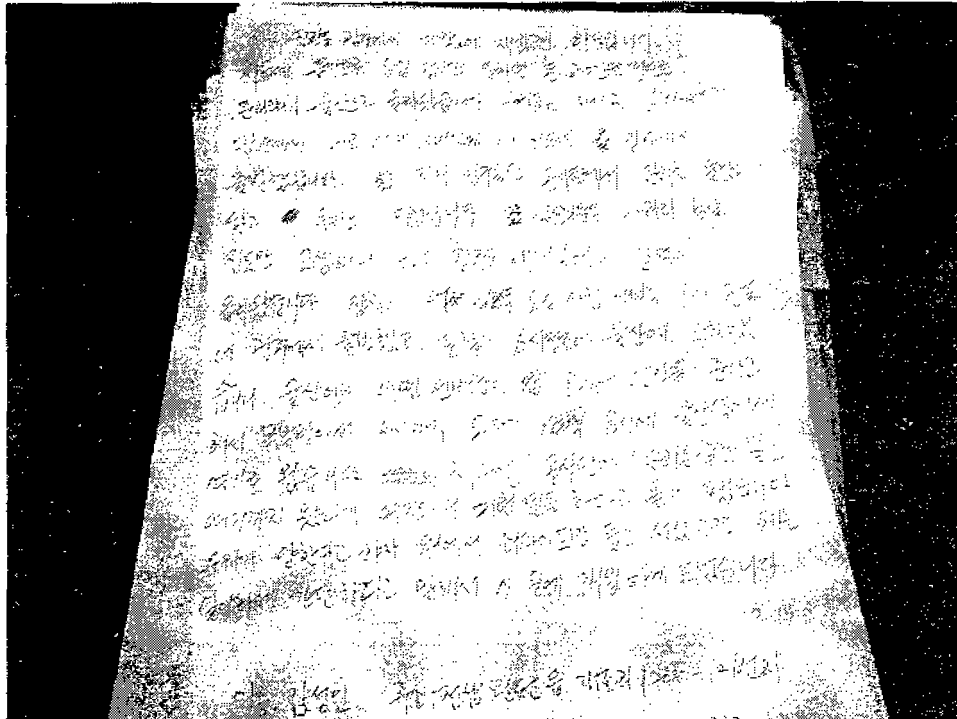
(노숙자들의 진술서4)

2007년 5월 25일 서울의국...
 ...
 ...
 ...
 ...
 ...

(노숙자들의 진술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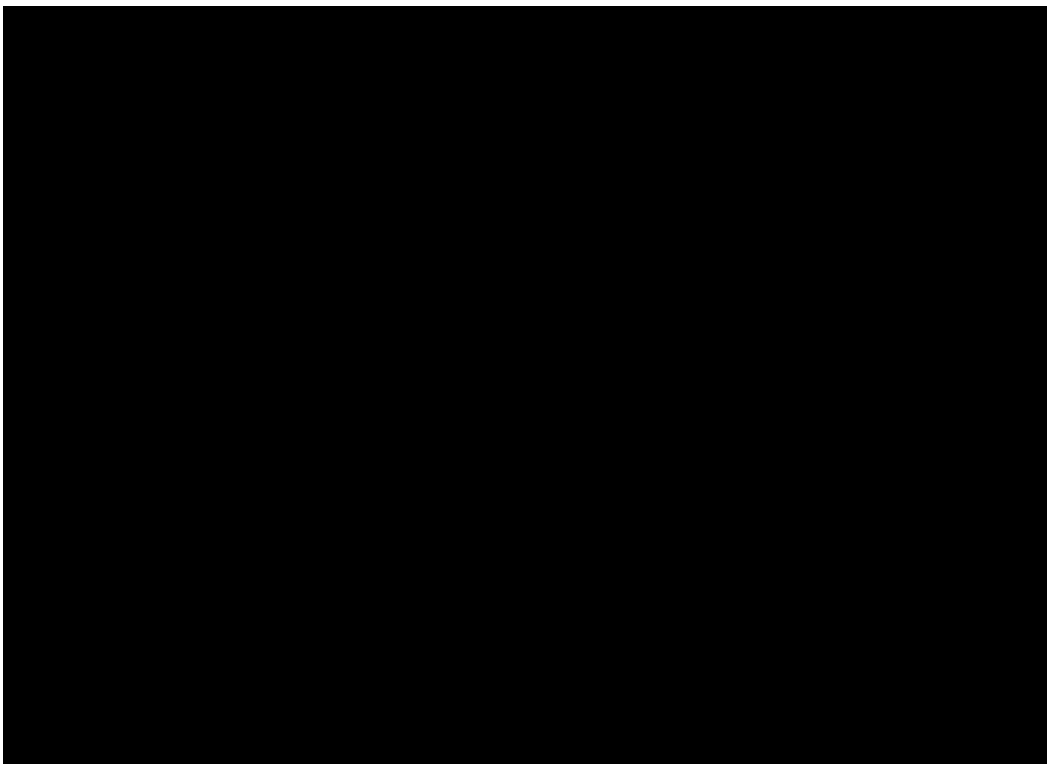
...
 ...
 ...
 ...
 ...
 ...
 ...
 ...
 ...

(노숙자들의 진술서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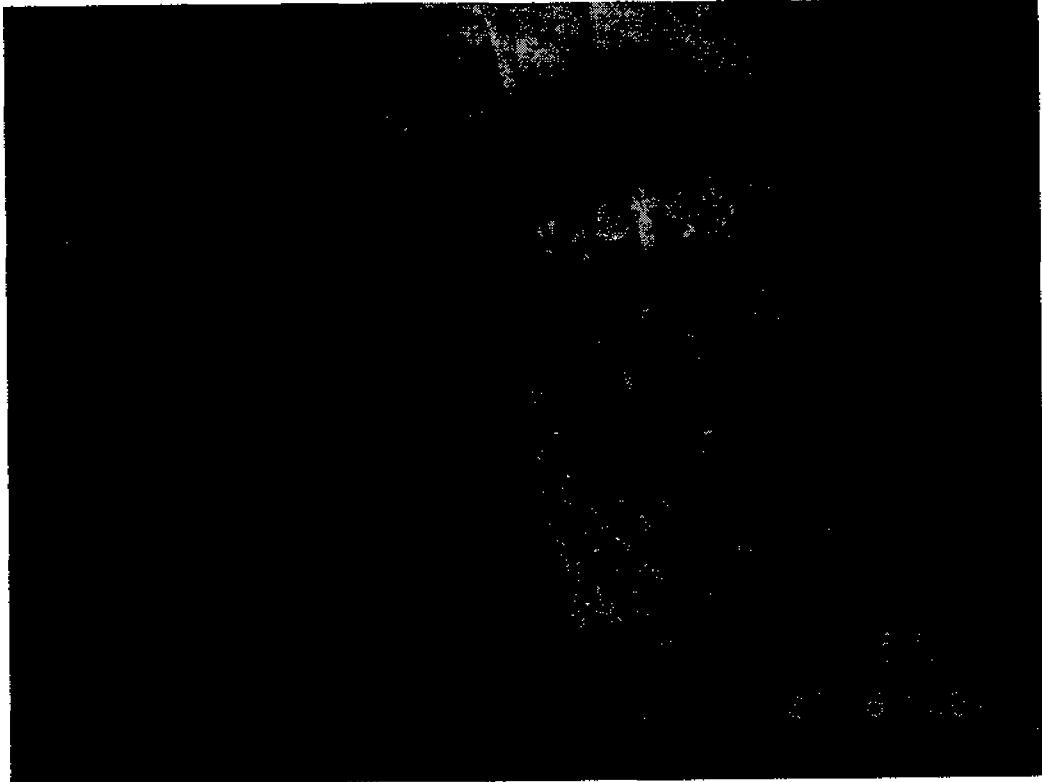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학생의 진술서 - 공사관에 일하는 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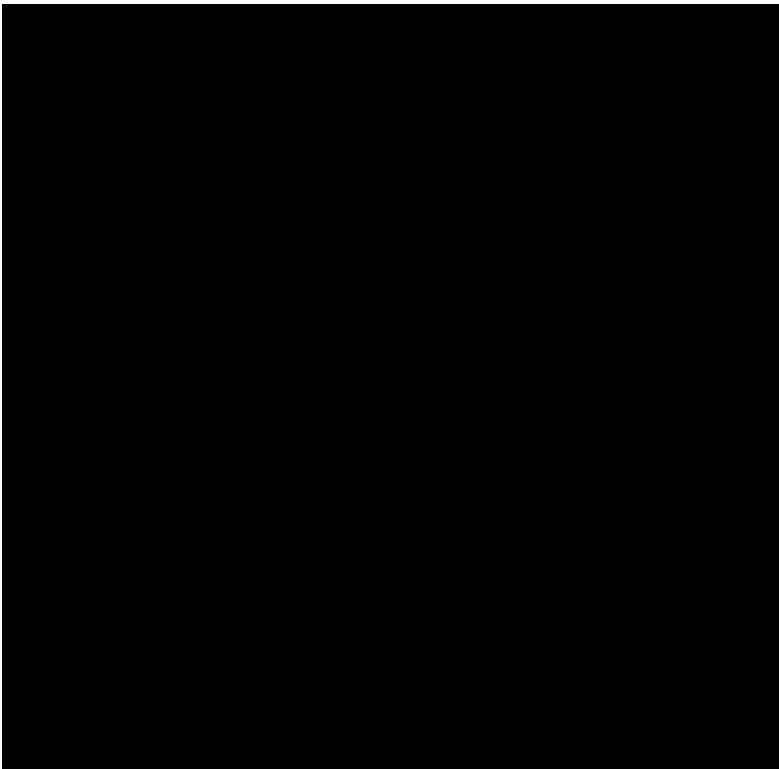
○부상당한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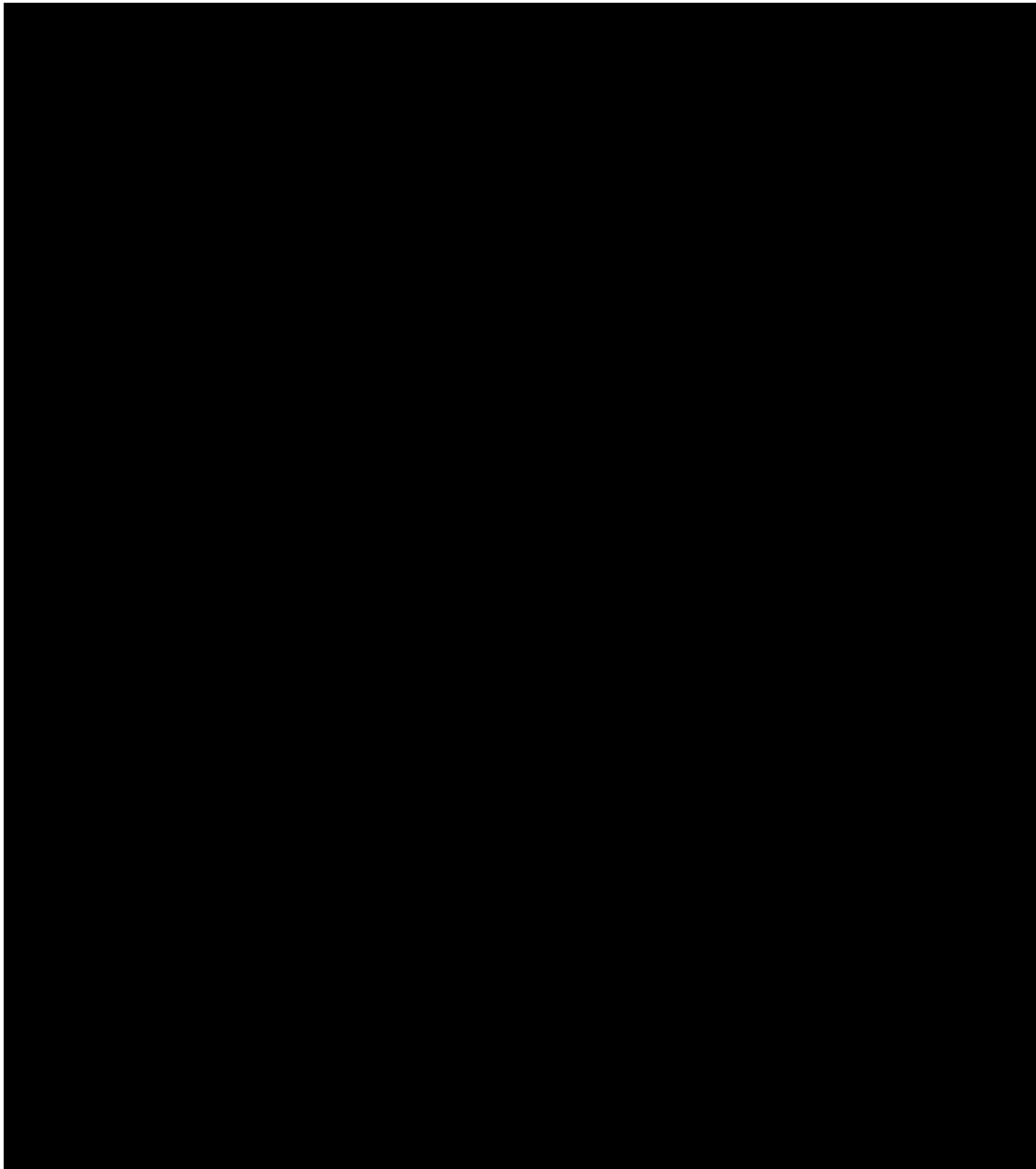
(농작장폐가 던진 돌에 맞아 부상당한 노동자1)



(부상당한 노동자2)



(경찰의 곤봉에 맞아 부상당한 노동자)



○ 구속 및 불구속된 노동자들(총 30명)

구속일	구형	1심선고형	항소선고형
5월6일	2년	1년(실형)	실형10월-02. 3. 출소
5월6일	1년	10월(실형)	징역8월/집유2년
5월6일	1년	10월/1년6월	징역8월/집유2년
6월4일	1년	8월/2년	항소기각
6월4일	1년	8월/2년	항소기각
6월5일	3년	2년(실형)	실형1년6월-02. 5.18가석방
6월5일	2년	1년(실형)	징역1년/집유2년
6월5일	2년	1년(실형)	징역1년/집유2년
6월5일	3년	2년/3년	항소기각
6월5일	3년	2년/3년	항소기각
6월22일	3년	2년/3년	항소기각
6월5일	2년	10월/2년	항소기각
6월12일	3년	2년(실형)	실형1년6월-02.5.18 가석방
6월12일	3년	1년6월/2년	항소기각
6월12일	3년	1년6월/2년	항소기각
6월12일	3년	1년6월/2년	항소기각
6월12일	3년	1년6월/3년	항소기각
6월12일	3년	1년6월/2년	징역1년6월/집유3년
6월12일	3년	1년6월(실형)	징역1년6월/집유3년
6월12일	3년	1년6월/3년	항소기각
7월28일	3년	1년6월/2년	추가(기소유예)
6월20일	1년6월	1년/2년	선고유예(1년)
불구속	2년	8월/1년6월	
7월28일	3년	2년/3년	
8월20일	2년	10월/2년	
9월16일	2년	1년/2년	
9월18일	2년	1년/2년	
9월18일	2년	1년/2년	
불구속	1년6월	10월/2년	
불구속	1년	2월/2년	

(위의 효성 노동자들 외에 민주노총 간부 및 지역 노동자 18명이 효성 파업증 구속됨)

○징계, 해고된 노동자

1) 해고현황 및 사례

■ 해고자명단 소속, 당시 조합정책

해고일시	해고사유	법률관계
2001. 7월	조합활동	지노위, 중노위 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6월	파업주동	지노위, 중노위 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6월	파업주동	지노위, 중노위 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6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 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6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 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6월	파업주동	지노위, 중노위 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5월	파업참가 및 조합활동	지노위, 중노위 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해고후 사직 처리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해고후 사직 처리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주동	지노위,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해고일시	해고사유	법률관계
2001. 7월	조합활동	지노위, 중노위 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6월	파업주동	지노위, 중노위 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6월	파업주동	지노위, 중노위 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6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 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6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 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6월	파업주동	지노위, 중노위 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5월	파업참가 및 조합활동	지노위, 중노위 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해고후 사직 처리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해고후 사직 처리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주동	지노위,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 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1999.	조합활동(99년)	대법원 확정판결(패소)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2001. 9월	파업참가	지노위승소,중노위기각, 민사소송 준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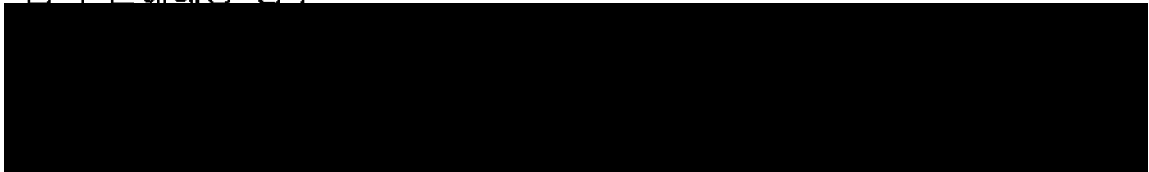
- 해 고 : 42명
- 정 직 1년 : 3명
- 정 직 6개월 : 19명
- 정 직 2개월 : 45명
- 정 직 1개월 : 60명
- 출근정지15일 : 56명

- 출근정지10일 : 33명
 - 출근정지7일 : 10명
 - 출근정지5일 : 23명
 - 감 급 : 64명
 - 견 책 : 3명
- 총 징계대상자 : 330명
- 해고사유 : 전원 부당징계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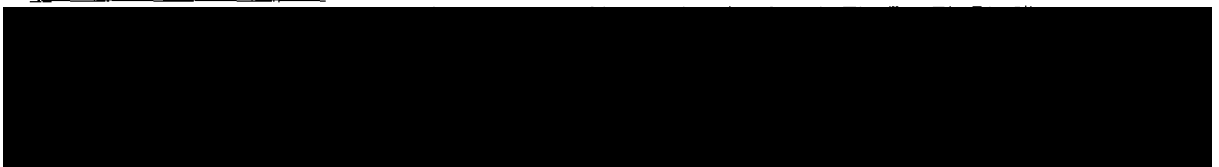
○ 손배,가압류

1)손배소 금액과 명단

- ◆ 언양공장 [사건번호 : 2001 가합 2088 손해배상(기)]
아래의 27명과 효성노동조합언양지부를 대상으로 전체 83억중 우선 20억원에 대한 금액 손해배상 청구



- ◆ 울산공장 [사건번호 : 2001 가합 2347 손해배상(기)]
아래의 28명과 효성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전체 200억원중 우선 50억원에 대한 금액 손해배상 청구



- ◆ 효성 울산 + 언양공장 : 총 57명 (울산, 언양 각 노동조합 포함)에게 약 290억원중 우선 7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2) 손배소 진행상황

2003년 12월 3일 첫재판

2003년 12월 30일 오전 11시 2차재판

효성파업 주요 일지

○ 2001년 1월

- ▶ 회사는 효성 울산공장 연신과 직원 14명에 대해 단협을 위반하고 부당한 전환배치 실시
- ▶ 노조와 노조원들이 반발
- ▶ 회사는 6명을 징계함

○ 2001년 3월

- ▶ 회사는 단협과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조반장 교육 실시
- ▶ 노조는 법과 단협을 위반한 회사의 일방적 교육 실시 반대 및 항의
- ▶ 회사는 노조간부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으로 고소고발

○ 2001년 5월

- ▶ 5월 6일 : 울산 검찰청과 남부경찰서는 박현정 위원장등 노조 지도부 3명에 대해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하여 노조에서 농성하던 위원장 및 지도부 연행, 구속
- ▶ 5월 12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쟁대위 구성, 쟁의 조정신청, 총회일자 확정
- ▶ 5월 14일 : 용역장패 회사밖에서 대기
- ▶ 5월 15일 - 22일 : 노조 총회 실시, 회사의 총회 방해, 15일 구사대 및 용역장패 현장투입
- ▶ 5월 22일 : 회사의 총회 방해로 12시 노조는 투표 중단 선언
- ▶ 5월 25일 : 0시 총과업 돌입 선언
- ▶ 5월 25일 : 02시 용역장패가 비무장한 노조원을 공격하여 1차 충돌
- ▶ 5월 28일 : 09시 용역장패의 2차 공격으로 충돌, 노조원들 구사대 용역장패 회사밖으로 쫓아냄

○ 2001년 6월

- ▶ 6월 5일 : 경찰병력 투입, 노조원 회사밖으로 밀려남
- ▶ 6월 6일 : 울산 성당에서 장외 농성 시작
- ▶ 6월 8일 : 용역장패 관련 회사를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로 고소고발
- ▶ 6월 12일 : 옥탑 고공 농성장 경찰 진입 최단식 직대등 8명 연행

○ 2001년 8월

- ▶ 장외농성 계속 진행 중
- ▶ 현재까지 효성조합원 23명 구속, 효성관련 민주노총 간부 및 노조원 18명 구속
총 41명 구속 / 효성조합원 5명 수배, 민주노총 간부 3명 수배
- ▶ 회사측 단 1명도 구속되거나 수배받지 않음
- ▶ 노조측 18명 재판중, 사측은 아직 단 한명도 법적 책임을 지거나 재판받는 사람이 없음
- ▶ 8월 11일 노사합의사항(노조 지도부 직권조인)
 - 임금 5% 인상
 - 민.형사상 고소, 고발 취하
 - 징계 최소화등
- ▶ 파업참가 조합원 직권조인 거부 - 비대위 체계로 파업 계속
- ▶ 9월 15일 현장 복귀
회사측 노사합의사항중 임금인상과 형사상 고소취하단 적용
민사(손배,가압류)는 취하하지 않고 2003년에 정식재판 진행중
징계최소화 하기로 했으나 마지막까지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 전원 징계
- ▶ 해고 43명, 징계 330여명

○ 2002년, 2003년

- ▶ 회사측 조직적인 노동조합 활동 개입
- ▶ 회사측을 대변하는 반장들과 어용세력들 대거 노조 대의원 당선
- ▶ 노동조합 규약변경함 - 위원장 선거 간선제로 전환, 민주노총 탈퇴 등

(주) 효성의 부당노동행위 부분

○ 단협을 위반한 일방적 전환배치

효성 단협에는 전환배치는 본인의 의사와 반해 실시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회사는 2001년 1월 연신과 조합원들을 본인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전환배치를 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조합원들 6명에 대해 징계했다.

연신과 전환배치는 이미 코드과에서 전환배치 후 하청화 한 선례에 비추어 여유인력을 전환 배치했다기 보다는 연신과를 하청화 하려는 수순이다. 관리자들도 공공연하게 연신과를 하청화 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작업 인원이 모자라는 부서도 전환배치에 포함시켰다.

이미 주) 효성은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비율이 43 대 57에 이를 정도로 급격한 하청화가 이루어졌는데도 회사는 계속해서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며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 단협 및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조반장 교육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노사간이 협의 후 합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노사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게 되어있다. 이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은 수 차례에 걸쳐 회사에 교육 문제에 관해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주) 효성은 이를 무시한 채 '관례'라며 일방적으로 실시하려다 노조가 이의 제기를 하자 실시하루전인 3월 10일 업무시간이 지난 오후 6시 공문도 아닌 교육일정을 때모로 노조에 통보하고서는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의 일방적 교육은 분명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런데 회사는 부당한 교육에 대해 항의하고 교육중지를 요청하는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 폭력혐의로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뒤이어 검찰이 위원장 및 간부들을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많은 회사들이 임단협을 앞두고 근참법이나 단협을 위반하고 일방적 교육을 실시하고 노조가 이에 항의하거나 저지하면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등으로 노조간부들을 구속시키거나 고소 고발하여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노조간부를 회유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 상급단체 및 노조원의 노조출입을 저지한 부당노동행위

효성 사측은 노동법에 보장된 상급단체의 노조출입과 노조지원 활동을 불법적으로 저지하였다. 상급단체 간부의 노조출입을 조정래 대표이사의 지휘아래 수사대와 용역장패를 동원하여 막았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의 활동은 모두 업무방해와 폭력으로 둔갑하여 노조간부들을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효성관련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주)효성 울산공장 인력관리팀장 이동원씨의 증언에 의해 노사간의 마찰 과정에서 회사 관리자가 노조간부들을 고소고발하는데 사용한 진단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였다고 밝혀졌다. 이것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관리자를 동원해 고소고발을 하게 하여 노조를 탄압한 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주) 효성의 부당노동행위 부분

○ 총회를 방해한 부당노동행위

효성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총회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총회사수투쟁이라는 말을 쓴다. 그 이유는 회사의 총회방해가 2001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13년 간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왔기 때문이다. 2001년 벌어진 회사의 총회방해 방법은 13년간 사용해온 회사의 총회방해 방법이 총동원되었고 여기에다 용역장패 동원, 법원 검찰 동원등 새로운 방법까지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모든 공장에서 수백명의 관리자와 수백명의 용역장패를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총회참석을 방해했다.

연양공장에서는 총회가 시작하기 하루전인 5월 15일 200여명에 대해 예정에도 없던 출장명령을 내려 총회기간 중 조합원을 관광지로 빼돌리는 납득 할 수 없는 총회를 방해했다.

울산공장에서는 조반장 및 관리자를 동원한 총회 참석 방해. 투표시 표를 찢어 오도록 종용하기도 했으며, 노조와 협의도 없이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총회 참석을 방해했다. 또한 회사는 출근시간을 변경하여 노조의 선전활동과 일상활동을 방해하고, 현장에 자물쇠를 달아 조합간부의 현장출입을 저지하고, 관리자를 동원해 휴게실에 대기하도록 감시하는 심각한 투표 방해가 이루어졌다.

안양에서는 조반장 및 관리자를 동원한 조직적인 조합원 통제, 관리자 인솔하에 줄지어 출퇴근, 중식시간에 투표를 못하도록 작업장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시켰고, 관리자 수백명을 동원하여 총회장을 둘러싸고 위화감과 공포분위기를 조장하여 투표를 방해하는 등 명백한 총회 방해 책동이 있었다.

단도기계 판매에서 보듯이 회사의 명백한 총회방해 등이 있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쟁의에 돌입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수렴을 통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은 불법과업이 아니다. 따라서 효성노조의 과업은 회사의 심각한 총회방해로 총회를 하기 어렵게 된 상태에서 과업전야제를 열어 다수의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쟁의에 돌입하였기에 합법적인 과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구사대를 동원한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회사는 5월 15일 본사직원, 타사업부 직원, 연구소직원, 관리자 등 100여명의 구사대를 투입한 이후 점차 늘려 5월 25일 28일에는 400여명의 을 동원하였다. 회사는 구사대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상급단체와 노조원의 회사 출입을 방해하고, 총회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과 총회를 방해하는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이렇듯 대규모 구사대를 동원한 부당노동행위는 최고 경영진의 결재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최고 경영진의 지휘아래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 분명하다. 이에 회사 최고 경영진은 즉각 구속하여 사법처리를 하여야 한다.

구사대로 동원된 사람들은 생산현장에 대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구사대로 동원되어 자괴감이 크다고 증언하고 있다.

검찰 경찰 노동부 법원의 일방적인 회사편들기

○ 검찰 노동부는 대통령 특별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울산 검찰청과 울산노동부 사무소는 (주)효성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번 효성사태는 쌍방 고소고발을 하였는데 노조측만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의 행위에는 원인과 과정 결과가 있다. 이번 효성사태의 경우 원인과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데 원인과 과정을 제공한 회사측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 없는 노조에 대한 일방적인 사법처리와 재판은 진실을 밝힐 수 없고, 회사측에 면죄부를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 검찰은 공안탄압의 시각에서 노사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5월 6일 하인수 검사가 화섬사 연대파업을 막기 위해 박현정 위원장, 김필호 수석, 김충렬 부위원장을 연행했다는 말을 지역 노동사회단체와의 면담장소에서 했다. 이것은 결국 효성사태의 본질이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일방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안탄압의 시각에서 효성문제를 접근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김충렬 부위원장과 김필호 수석부위원장은 이미 조사를 받은 상태였고 박현정 위원장은 남부서와 출두 날짜를 협의해 놓은 상태여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사유가 될 수 없어 구속수사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검찰은 긴급체포 영장을 발부하여 노조사부실까지 침탈하는 야만적인 탄압을 벌이며 노조간부를 구속하였다.

○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불법으로 몰아 부친 노동부

6월 27일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듯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어떠한 중재개시일 10일 후에는 합법적으로 쟁위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조정신청은 기존의 냉각기간을 대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효성노조가 조정신청을 내고 10일을 경과한 쟁의행위는 합법적인 것이다. 교섭해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11일 노동조합이 신청한 쟁의조정신청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회사측의 편을 드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미루고 마루다 사회문제가 되자 지난 7월 25일에야 검찰에 송치하는 늦장 조사와 처리로 일관하고 있다.

○ 경찰의 용역경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

용역경비회사가 청소년, 노숙자 고용, 학생등 무자격자를 고용하였는데 경찰은 용역경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용역강제의 노조원 폭력행위시 남부서 정보과 형사가 현장에 있었으나 용역강제들의 불법무기 소지 및 폭력행위를 저지하지 않았고 뒤늦게라도 관리감독을 해야하지만 남부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